

품목분류  
CASE 7 장식용 목재 명판

판정번호  
N359164

물품 정보

용도

- 메시지를 기재할 수 있는 목재 명판으로, 합판 스탠드에 세워 장식용으로 사용

구성

- 유성 마커
- 스탠드(받침용)
- 목재 명판

쟁점 HS



제 4420 호

목재로 만든 장식품

제 9608 호

펜과 마커

CBP 판단

- 통칙 제3호 (나)에 따른 ‘소매용 세트’ 해당 여부 검토
  - 유성 마커와 목재 명판·스탠드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
  - 모든 구성품은 메시지를 전시하여 장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께 조합
  - 별도의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

쟁점물품은 소매용 세트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

- 세트의 본질적 특성은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시하는 목재 명판에 있음. 따라서 목재 명판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판단

미국 HS-CODE 결정

4420.19

목재로 만든 장식품